

대법원 2016. 10. 27 선고 2016다237905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

피고, 상고인 A

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. 6. 29. 선고 2015나55427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,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16.10.27.

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